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4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권칠승

김정호 • 김홍걸 • 윤영덕

김승원 • 문진석 • 송영길

김민기 · 강선우 · 박영순

홍익표 · 김경협 · 아수진비

김경만 · 윤미향 · 박홍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따라 2020년 6월 9일에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교수도 단결권의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국·공립 대학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을 "외교정보관리직 공무 원 및 조교인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제6조(가입 범위) ①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2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	
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	외교정보관리직 공무
<u>원</u>	원 및 조교인 교육공무원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